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30 선고 2016가합502871(본소), 2016가합529159(반소) 판결
[구상금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피 고 C

변론 종결 2016. 8. 9.

판결 선고 2016. 8. 3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12,717,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B에게 172,731,4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0. 4. 7. 주식회사 융창상호저축은행(이하 '융창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C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으로 원고 소유의 서울시 용산구 D아파트 209동 1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8,5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융창저축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2. 3.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시행된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5억 5,500만 원으로 평가되었는데, F은 2015. 10. 13. 매각대금 585,502,191원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근저당권자인 융창저축은행은 배당기일인 2015. 12. 23. 실제 배당할 금액 579,752,574원(= 매각대금 585,207,090원 + 매각대금 이자 295,101원 - 집행비용 5,749,617원) 중 556,967,997원(= 이 사건 대출금 4억 5,000만 원 + 이자 106,967,997원)을 배당받았고, 소유자인 원고는 잉여금 21,273,27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구상금 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을 받아 피고들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인 융창저축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그 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이 변제되어 피고들이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갖는다.

2) 구상의 범위

복수의 연대채무자들 모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연대채무자들을 면책시킨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어느 연대채무자에게나 출연액 전부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고(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606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부탁으로 물상보증을 한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그로 인해 소멸시킨 주채무액(면책액)과 그 금액에 대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등이다(민법 제370조, 제341조, 제441조, 제425조 제2항).

피고 회사는 융창저축은행에 대해 피고 C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부탁으로 연대채무자인 피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피고들의 면책액 556,967,997원과 집행비용 5,749,617원의 합계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중 원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한다고 자인하는 50,000,000원을 뺀 512,717,614원(= 556,967,997원 + 5,749,617원 - 50,000,000원)¹⁾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면책일 다음날인 2015.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1. 2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중 5,000만 원은 원고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이자 역시 원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 17,651,779원[=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2010. 4. 8.부터 2015. 12. 23.까지 발생한 이자 158,866,013원 $\times$ 1/9(5,000만 원/4억 5,000만 원)]은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역시 위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자신의 부담 부분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원금 5,000만 원의 변제에 더하여 피고들이 융창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2006. 7. 21.경부터 2014. 9. 22.경까지 1,805,340,000원을 연 30%의 비율로 차용하고 같은 기간 원고에게 2,927,802,065원을 상환함으로써 차용금 및 이에 대한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여 717,797,318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부당이득으로 피고 회사에 717,797,318원에서 원고의 융창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67,797,318원(= 717,797,318원 -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가 구하는 구상금채권 512,717,614원에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인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 17,651,779원을 뺀 나머지 495,065,835원(= 512,717,614원 - 17,651,779원)과 상계하면 원고에 대한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피고회사는 위와 같이 상계하고 남은 부당이득 172,731,483원(= 667,797,318원 - 495,065,8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반소로서 구한다.

2) 판단

가)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9. 5. 피고들과, '원고는 피고들에게 13억 2,000만 원을 대여기간 2011. 9. 5.부터 2012. 9. 5.까지, 이자 연 24%로 각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1. 10.

20. 위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길도 증서 2011년 제157호로 공증을 받았는데, 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1. 9. 5. 현재 원금 13억 2,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가 별도관리하고 있는 개인별 차용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별지1 개인별 차용금 총 정리

성명	금액	기타 사항	비고
G	131,440,000		
H	65,720,000		
I	131,440,000		
J	26,288,000		
K	65,720,000		
L	26,288,000		
M	16,218,000		
N	10,812,000		
소계	473,926,000		
원고	350,000,00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 4억 5,000만 원 중 4억 원을 피고들이 변제하고 5,000만 원을 원고가 변제하기로 약정한다. 2011. 9. 1. 상호 확인함(금전 소비대차계약서상에는 D아파트 대출분은 제외됨)	
O	125,334,000		
P	120,000,000		
Q	80,000,000		
R	53,000,000		
소계	378,334,000		
S	104,000,000		
T	146,300,000		
U	49,320,000		
V	36,320,000		
소계	85,640,000		
W	86,600,000		
X	45,200,000		
소계	131,800,000		
총계	1,320,000,000		

나) 살피건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58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는 처분문서이고,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2011. 9. 5.경 그 때까지의 대여금을 13억 2,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고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2011. 9. 5. 이후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약 1억 원에 불과하므로, 이와 달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초과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들은 위 공정증서는 피고들이 그 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원고가 자금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날인만 해달라고 부탁하여 날인한 것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 측은 2011. 7. 30. 이 사건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원고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 ② 이 사건 계약서의 별지'개인별 차용금 총정리' 중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은 피고들이 4억 원을, 원고가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대출금은 이 사건 계약서상 대여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들은 그 옆에 인장을 추가로 날인한 사실, ③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에는 '본 계약 체결을 통해 피고들이 연대하여 발행한 약정서와 문서는 해제 및 해지되며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외 채무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 가능한 약정서 원본을 회수·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피고들이 발행한 약정서 대부분을 회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들은 약정서등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을 보관하면서 임의로 만든 것이고 원고로부터 약정서 등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1. 22.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의 채권자 겸 운영관리자와 투자자간 투자에 대한 약정서작성 및 제반 업무 수행과정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용인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용인감에서 기재된 목적에 한정하여 피고 측에게 투자자를 유치하여 주는 과정에서 사용인감을 사용한 후에 피고 측에게 투자자와 체결한 약정 내용을 보고하거나 피고 측으로 하여금 직접 약정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를 통해 차용한 돈은 모두 피고 측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약정서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못한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④ 피고 C은 10년 넘게 건설업에 종사하며 피고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2006년경부터 있었던 금전거래내역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금액을 파악한 상태에서 이를 정산할 의도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은영, 판사 이장욱, 판사 전명재

1)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중 1억 원은 원고가 사용한 것이므로 1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2016. 2. 16.자 답변서),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갑 제3, 6호증)에 반하는 주장으로, 그와 달리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